

의안번호	2202222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4. 10. 17.
추계번호	24D229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,600만원, 2030년 2억 5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2억 2,800만원(연평균 2억 4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재난원인조사 (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)	236	240	246	250	256	1,228	246

- 주: 1. 재난원인조사(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,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이 연평균 2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2. 재난원인조사 1회당 비용은 2023년 기준 1억 1,0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(재난원인조사)	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, 중앙대책본부 등을 구성·운영하게 한 재난은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(재난원인조사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에 대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현행법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단의 활동과는 구분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관련 비용은 재난원인조사단 연간 운영비를 참고하여 추계
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재난원인조사단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재난 등에 대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운영하며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재난은 7건이고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은 아님

[표 2]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: 2018~2022년

재난사고명	사고발생일자	조사기간
낙산배 안전사고(통영시 해상 무적호 충돌사고 등 포함)	2019.6.14	2019.5.29~2019.8.29
도림천 교각사고	2019.9.5	2019.9.6~2020.1.14
신중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	2019.10.15	2019.10.7~2020.1.31
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	2019.7.31	2019.9.5~2020.2.24
순천-완주간 사매2터널 교통사고	2020.2.17	2020.3.20~2020.7.17
숙박시설 화재사고	2020.1.25	2020.2.25~2020.8.19
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 등	2020.6.17	2020.9.17~2021.5.21

자료: 행정안전부

- 이에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의 경우, 중앙재난대책본부 등의 구성·운영을 통해 대응한 사례가 많아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, 지역재난대책본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부재하여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연평균 2건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행정안전부의 「재해연보」에 따르면, 최근 5년(2018~2022년) 동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는 연평균 2건인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매년 2건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2023년 기준 1억 1,000만원을 편성
 - －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및 재난·사고 조사 : 7,700만원²⁾
 - － 재난원인조사 차량 및 회의실 임차 : 1,000만원
 - － 재난·사고 현장조사 여비 : 1,900만원
 - －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및 간담회 : 400만원
 -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적용

[표 3] 재난원인조사 1회당 비용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재난원인조사 1회당 비용	118	120	123	125	12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7 기준)

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5.1%	3.6%	2.6%	2.2%	2.2%	2.1%	2.1%	2.1%	2.0%

2) 재난원인조사단(반) 회의참석 수당 150천원*6명*24회=2,200만원, 재난원인조사단(반) 현장조사 수당 350천원*6명*3회*6일=3,800만원, 조사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 1,500천원*8회=1,200만원,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300천원*18회=500만원

-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,600만원, 2030년 2억 5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2억 2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의 재난원인조사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: 2026~2030년
(단위: 건,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특별재난지역 재난 수(A)	2	2	2	2	2	—
재난원인조사 1회당 비용(B)	118	120	123	125	128	—
추가재정소요(=A×B)	236	240	246	250	256	1,228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이 연평균 2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